

하나UBS 오퍼레이션-2018-129호

2018. 9. 28

수 신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참 조 상품담당부서장

제 목 하나UBS코스닥1등주 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및 Class A-E 기준가격 변경내역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나UBS코스닥 1등주 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및 Class A-E 판매 보수를 시스템 입력 오류에 따라, 기준가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에 의하여, 기준가격 변경 전후의 차이가 1천분의 2를 초과하는 'Class A'의 5영업일간 기준가격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협회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3. 당사에서는 기준가격 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무관리회사인 하나펀드서비스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업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변경전후 판매보수율

펀드명	변경전	변경후
하나 UBS 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주식]ClassA	연 0.70%	연 0.40%
하나 UBS 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주식]ClassA-E	연 0.35%	연 0.20%

나. 공시대상 기준가격 변경내역

영업일	예탁원 종목코드	펀드명	기준가격			증감률
			변경전	변경후	차이	
2018-09-11	KRZ502200971	하나 UBS 코스닥 1 등주 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주식]ClassA	937.72	939.60	1.88	0.0020049
2018-09-13			948.89	950.79	1.90	0.0020023
2018-09-17			964.57	966.50	1.93	0.0020009
2018-09-18			958.41	960.34	1.93	0.0020138
2018-09-19			958.93	960.87	1.94	0.0020231

첨부: 하나펀드서비스의 '기준가격 오류 사실의 보고' 공문 1부. 끝.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이원중 (인)

